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 농촌지도자층 농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conomic Status of Rural Women

대구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 수 趙 熙 今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 Taegu University
Prof. : Hee-Keum Cho

〈목 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의 분석 및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pensation of rurul women receive instead of their physical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to their households. I am specifically concerned with the rural women's economic status in relation to their decision making power on household and agricultural economic issues as well as property held in their names.

The data of 166 rural men and women in Kyungpook Province a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s in June, 1998.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ural women contribute average 53% of their husbands' contribution to agricultural labor, which is on average 43.0% of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2) The decision making power on major economic issues remains still very low among rural women. Rural women are still excluded from the possibility of actually owning assets such as property. Only 18% had assets under their names for assets.

3) The significant factors concerning the rural women's decision making power on economic issues are gender-role attitudes of rural women and the husband's judgment of how much their wives contribute to the annual household income.

* 이 논문은 1998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4) The major factors which influence rural women owning household assets are the decision making power on economical matters, contribution to the annual household income, and each woman's education level.

Ⅰ. 서론

우리나라 농업은 전통적으로 가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경영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가의 가족구성원인 농촌여성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의 젊은 노동력을 도시적 산업에 빼앗긴 농촌은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성노동력이 중요한 노동자원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는 눈에 띄게 증가하여 왔는데, 최근 농촌이 소득증대를 위해 복합영농과 상업적 농업을 확대하면서 여성노동력은 더욱 중요하게 되고, 이제 농촌여성은 농업의 기간노동자가 되었다.

농촌여성의 농업에 대한 기여는 여성의 노동투하량 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여성노동력의 비중은 1975년 33%를 차지했던 것에서 1985년에는 42.8%, 1996년에는 47.7%로 증가하였다. 즉 1996년 농가의 노동투하량 가운데 가족노동력 투하량의 45.1%를 여성이 제공하고 있으며, 품앗이나 고용노동의 경우는 여성의 비중이 더 높아서 품앗이는 63.3%, 고용노동은 59%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농림부, 1996).

한편, 농촌여성은 남성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농업노동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등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노동시간은, 농가의 농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농번기에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하여 13시간정도, 농한기에도 약 8시간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1994). 이는 총노동시간을 비교했을 때 농가의 경영주보다도 더 많은 시간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시간 노동에 참여하는 농촌여성들은 가족종사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컨데, 농촌여성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농촌여성들은 자신들의 노동참여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김주숙, 1992; 김종숙 · 정명채, 1992; 한경혜 · 장미나, 1993, 박성자, 1996; 한국여성개발원, 1997; 정기환, 1997). 오히려, 농촌여성들은 농사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농업교육기회나 농업의 변화로부터도 소외되어, 여성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자로서의 지위가 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인간의 노동력은 생산의 중요 요소이고 산업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건 그 대가가 보수로 주어지게 된다. 물론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했던 과거의 농업에서는 노동력 제공에 대한 별도의 보수가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의 농촌은 자급자족적 농업의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 농업을 하고 있고, 농업소득을 획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촌여성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데 따른 노동보수는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이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농가단위의 수입이나 생활원이 될 뿐이다. 이런 현상은 농가의 농업소득 자체가 작아서 농가의 누구도 농업노동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인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가부장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농촌에서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는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인식되어 여성을 농업생산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농촌여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인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여성들이 그들의 노동참여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어떤 형태로 어느정도 보상받고 있는지를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다.

만일 농촌여성들이 자신의 농업노동 참여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 가정에서 경제적 재량권도 갖지 못한다면, 그만큼 여성자신의 농업에 대한 직업의식도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여성들이 자신들의 노동력 투입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를 이들의 가정내 경제적 지위를 통해서 살펴보고,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지표는 가정내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와 농가가 보유한 농가자산 가운데 여성명의의 자산소유 실태이다. 농촌여성의 노동참여에 대한 보상을 경제적 지위의 측면에서 살펴 보는 것은, 농촌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이들의 직업의식 또는 농업경영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촌여성의 노동력 참여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주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미맥농가보다는 규모가 큰 전업농이나, 특작, 과수, 축산 등 상업적 농업을 주로 하여 농가의 소득이 높은 농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농가보다는 젊은 연령층의 농가에서 가능할 것이다. 즉 과거의 농촌보다는 앞으로의 농촌에서 여성노동력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농촌의 여성노동력은 앞으로 농촌에서 더욱 중요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998년에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중요한 농업정책 과제의 하나로 가족농육성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의 부부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자립적인 농가경영을 의미하는 것으로(김정호, 1998), 이제 정부에서도 농촌여성 노동력을 농촌의 주된 노동력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농업의 상대적인 경제적 기여도 이상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농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촌의 가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농촌의 가정은, 농촌여성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살만하다고 느낄 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농촌여성들의 노동실태와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분석을 통하여 농촌여성 노동력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파악하므로써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앞으로 농촌여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농촌여성들의 가정내 경제적 지위의 실태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실태와 농가소득 기여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농촌여성들의 가정내 경제적 지위의 실태는 어떠한가?

1) 농촌여성들의 가정내 경제적 의사결정권은 어느정도인가?
2) 농촌여성들의 재산소유 실태는 어떠한가?

세째, 농촌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1) 농촌여성들의 경제적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농촌여성들의 자산소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선행연구의 고찰

1.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위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연구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들면, 한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그의 노동력 투입과 그에 대한 보수로써 측정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실질 연간소득, 개인의 실질 시간당 임금, 가정의 실질 연간 소득, 자신의 연간 노동시간 등으로 측정하는 것이다(Rogers 등, 1997, 941).

최근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가정에서도 그에 합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여성의 지위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정내 여성의 지위는 여러 가지 가족관행, 부부간의 언행, 의사결정권과 영향력의 행사, 경제권,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분담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

를들면, 가정내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권력관계는, 의사결정과정 및 결과, 가사노동 분담실태 그리고 자원분배 등의 측면에서 측정되고 파악될 수 있다. 즉, 의사결정권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사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자원분배 측면에서 가족의 재정적 자원인 소득의 분배방식과 부동산의 명의가 누구의 것으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 봄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측정할 수 있다(박민자, 1992; 151-157).

한편,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경제 및 가정생활에서 낮은 지위를 가지는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 여성관과 성역할 규범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증대되어 자원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여성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김양희, 1995).

농촌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농촌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증대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김주숙, 1994, 김종숙 외, 1992; 김이선, 1997). 다만 매우 포괄적으로 농촌여성의 지위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가사와 영농에 관한 의사결정 수준을 살펴본다거나(한국여성개발원, 1987; 151-156, 김이선, 1997; 134), 또 농촌여성들의 영농 의사결정 참여정도, 노동에 대한 보수, 농협활동에의 참여 등을 통해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언급하고 있다(김종숙 외, 1992; 13-15).

농촌여성들이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에 종사한 시간을 기준으로 농촌여성의 노동 기여정도를 화폐가치로 평가한, 농가주부 노동의 연간 화폐가치 평가액은 대상농가 평균소득의 약 4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숙 외,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여성들은 가장 중요한 농업생산의 수단인 토지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으며 소유는 물론 공동소유, 처분권을 갖지 못하고, 농기계에 있어서도 소외되어 있다(김종숙 외, 1992; 박성자, 1996).

이상의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볼 때, 농촌여성의 가정내 경제적 지위는 이들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가와 또 경제적 자원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2. 농촌여성의 경제적 의사결정권

가정생활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부부 중 누가 최종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부부간의 권력관계를 측정한 연구는 1960년대 미국의 Blood와 Wolfe에 의해 시도되었다. 즉 부부간의 권력관계는 부부간에 행해지는 의사결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편과 부인 사이 입장의 우위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사를 통해 이들은 부부간의 의사결정 유형을 자율형, 남편우위형, 부인우위형, 부부공동형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가정에서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이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상당히 증가해서, 많은 여성들이 가정내 의사결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정내 권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는 의문을 가진다. 왜냐하면 오히려 귀찮은 집안일은 부인이 알아서 하고 정작 중요한 결정은 남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사영역의 의사결정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가정내의 권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박민자, 1992).

농촌가정에서 여성의 가정내 의사결정 참여는 이들의 지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들 연구의 촛점은 가정생활과 영농에 관한 의사결정에 부인이 어느정도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것과, 농촌여성의 그동안의 역할증대가 의사결정권이라는 지위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대체로 역할의 변화 즉 농업노동 참여증가가 그들의 의사결정권의 강화나 지위향상과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한기, 1977; 김주숙, 1982; 최재석, 1983; 조희금, 1986; 한국여성개발원, 1987; 김종숙 외, 1992; 한경혜 외, 1993; 경북농촌진흥청, 1994; 한국여성개발원, 1997).

의사결정권은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생활의 여러측면에서 주부가 주로 결정하거나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주부참여형의 의사결정형태를 갖는 주부들이, 주로 남편이나 시부모 또는 자녀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부들보다 삶의 질을 더 높게 인식하며(조희금, 1986), 생활에서의 만족도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경혜 외, 1993). 또 부부간에 의사결정의 일치가 잘될 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경북농촌진흥청, 1994).

농촌가정의 의사결정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데, 가정생활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부인이 주도적이나 아직도 영농에 관계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어서, 생활자재 구입 등은 부인 재량으로, 자녀교육문제는 부인이 주도적인 상의형으로, 재산에 관한 문제나 영농분야는 남편 주도적 상의형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종숙 외, 1992; 101). 즉, 농업생산권이나 재산권은 주로 남편이, 소비권과 관리권은 주로 부인이 그리고 자녀양육권과 여가활동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경북농촌진흥청, 1994).

그러나 영농분야에 대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가 낮은 것에 대해 정기환은(1997; 125-127) 캐나다 농가의 자료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농촌여성이 농업경영의 각종 의사결정에서 크게 소외되었다기 보다는 의사결정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보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가정내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Rosen 등은(1983) 가정의 금전관리에서 부인과 남편의 역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성역할태도와 교육을 들고 있으며, Qualls (1987)도 가정용품구입 결정이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Cynthia (1995)는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부부의 역할구조를 분석한 결과 부인에게는 성역할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남편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자산관리과정에서 부부간의 역할구조를 살펴본 연구에서는(안수미, 1998), 부인의 연령이 높고 부부의 연령차이가 크며 남편의 소득이 높고 부부간의 소득격차가 크고 부동산의 보유액이 크며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 때 자산관리과정의 전 단계에서 남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관리형태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농촌여성은 자신의 농업노동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영농의사결정권도 높아져서, 여성이 주노동력으로 참여할 때가 보조노동력으로 참여할 때 보다 의사결정 참여가 높으며(한국여성개발원, 1987; 152; 김종숙 외, 1992; 104), 금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은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고, 영농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반적으로 연령에 있어서 30대, 학력은 중졸이상의 경우, 그리고 영세농가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정도가 높았다(김종숙 외, 1992; 83-100).

3. 농촌여성의 자산소유

농민에게 토지는 주요한 생산의 요소이며 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부계가족으로서 농민가족에서 여성들의 재산 소유나, 상속, 그리고 더욱이 토지의 소유와 상속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였다(김주숙, 1992). 최근의 가족법은 부인에 대한 상속비율을 늘리고, 상속세도 상당부분 감면하고 있다(1998년 7월 현재는 2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세 감면). 그러나 아직도 호주상속은 제1순위가 직계비속 남자이고, 다음 순위는 직계비속 여자, 전호주의 처 순으로 되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는 호주상속과 함께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부부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가에 따라 귀속되며,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부부의 공동노력, 공동노동에 의한 재산획득은 거의 남편의 소유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농촌에서 여성의 농지소유가

남성에 비해 적은 것은 비록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Fortmann, 1984, 453).

농촌여성은 특히 농지의 구입과 매각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참여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토지로부터 소외된 여성의 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한 조사(김종숙 외, 1992 100-101)에 의하면, 농지의 구입과 매각에 여성 단독결정은 4.0%, 여성이 주가 되어 남편과 상의하는 결정유형은 7.9%에 불과하여 농지의 구입과 매각에 대해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는 비율은 극히 적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부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농경지의 소유가 적기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조사지역에서 부인명의의 토지를 소유한 농가는 121호중 17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농촌의 여성들은 토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토지의 구입과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농촌여성들은 자신의 소유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나마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고, 재산이 많고 연간소득이 높은 계층이었다(조희금, 1996).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농촌보다는 앞으로의 농촌과 농업정책에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우리 농촌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현재 상태와 함께 앞으로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농촌을 이끌고 나갈 주도적인 농민층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 농촌여성의 가정내 경제적 지위는 여성 자신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남편과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자신의 평가만이 아니라 남성이 자신의 부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목적에서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째는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1] 둘째는 그 가운데 여성전공에 등록된 10명의 수강생을 면접하고 각자의 마을에서 비슷한 농사일을 하는 농촌여성을 각각 10명씩 추출하여 조사하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홍두승, 1992:81-82). 질문지는 총 190부가 배포되어 172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16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는 연구자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문항을 수정한 후 본조사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본조사는 1998년 6월 4일에서 6월 18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자료정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전화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및 분석방법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질문지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대상가정에 대한 문항들과 응답자 개인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연령, 학력, 배우자의 직업 등의 개인적 문항과, 부모동거 여부, 자녀에 관한 사항 및 농가의 농경지 및 자산 보유실태, 그리고 가계내 여성명의의 자산 소유실태 등 농가의 특성에 관한 문항들이다. 그 밖에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농업노동 참여실태 :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실태는 농사의 종류별(논농사, 밭농사, 하우스, 과수, 축산)로 부인의 참여정도를 남편의 참여실태와 비교

1)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경상북도 전 지역의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의 경영주들을 농촌발전의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하는 1년과정의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은 채소, 과수, 특작, 수도작, 축산 등의 전공과 1998년 부터 새로 추가된 여성전공의 6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 과정의 전공주임이신 경북대학교 이호철교수님과 면접과 질문에 응해준 수강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즉 남편의 참여를 10으로 할 때 부인의 참여정도를 표시하였다.

소득기여도 : 지난 1년간 가계 총소득을 100으로 할 때 부인의 기여도를 %로 표시하였다.

의사결정 유형 : 가정일이나 영농에 관한 내용 중 경제적 내용에 관한 문항 9개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척도로 ① 남편 혼자 알아서 결정, ② 부부가 의논하지만 남편이 주로 결정, ③ 부부가 의논하지만 부인이 주로 결정, ④ 부인이 혼자 알아서 결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인의 결정권이 높은 것이며 이들 문항의 신뢰도계수 α =.68이었다.

성역할 태도 : 성역할 태도 척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5점 리커트척도(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냄)의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α =.74였다.

이상의 척도에서 남자는 자신의 성역할 태도 및 자기 부인의 노동참여 실태와 소득기여도에 대해 응답하게 되고, 여자는 본인의 성역할 태도와 자신의 노동 참여정도 및 소득기여도를 응답하며, 각자는 자기가정의 의사결정 유형을 응답하게 된다. 즉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여성자신이 인지하는 측면과 남편들의 평가를 고려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 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농촌여성의 노동참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포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경제적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그리고 농촌여성의 자산 소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3. 조사대상자 및 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표 1〉에서 조사대상자 및 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자가 40.4%, 여자가 59.6%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은 남.여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40대의 비율이 높고, 여자는 30대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학력은 남자는 고졸이 69.7%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중학교 졸이 38.3%로 가장 많아서 여자에 비해 남자의 학력 수준이 높았다. 조사대상 본인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데 배우자의 직업을 보면, 남자들은 배우자인 부인의 직업이 농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4.1%였으며, 여자는 77.6%가 남편의 직업이 농업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조사대상 가정의 특성을 보면,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56.9%로 가장 많았고, 51.3%가 부모세대와 동거하고 있는 반면, 29.7%의 가구에서 미혼의 자녀를 도시에 내보내고 있었다. 미혼의 자녀가 출타한 이유는 67.3%가 학교때문이며, 16.3%가 군대, 14.3%가 직장 등으로 나타나서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와 농촌의 이중살림을 감수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농가의 평균 소유경지 규모는 논, 밭, 과수원을 합해 4,282평으로 전국농가의 평균 경지면적보다 넓었고, 세금과 비용을 제외하기 전 년간 총조소득은 4,666만원으로 이역시 전국 평균수준 보다 많았으며, 부채의 규모 역시 가구당 평균 부채액이 6,820만원으로 평균수준 보다 많았다.[2)]

Ⅳ. 연구결과의 분석 및 논의

1. 농촌여성의 농업노동참여 실태 및 기여도

농촌여성의 노동참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남편이 인지하는 자기 부인의 노동참여 정도와 농촌여성 자신의 응답을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 가정에서 농사의 각 종류별로 어느 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가를 〈표 2〉에서 볼 수 있다. 농사의 종류별로 볼 때 밭농사는 대상농가의 75.2%가 지난 1년간 농사를 지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

2) 1996년 우리나라 전체농가의 평균 소유경지면적은 논이 1,677평, 밭 616평, 과수원 285평으로 총 2,578평이다. 또 농가의 년간 총 조수입은 27,217,871원으로 농업조수입 17,283,547원, 겸업수입 3,284,999원, 사업외수입 6,649,325원이며, 농가부채는 11,733,723원으로 나타났다(농림부, 농가경제통계연보). 이상의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본 조사대상 가구는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인 논보다 밭과 과수원이 많은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이 각 지역의 농민후계자 혹은 전업농으로 전체 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표 1〉 조사대상자 및 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N, %)

변 수	항 목	남자 (N=67)	여자 (N=99)	변 수	항 목	(N=166)
연령	29세이하	2(3.0)	1(1.0)	자녀수	1명	10(6.1)
	30 - 39	26(38.8)	42(43.8)		2명	94(56.9)
	40 - 49	35(52.2)	44(45.8)		3명	51(30.9)
	50세이상	4(6.0)	9(9.4)		4명이상	10(6.1)
학력	무학	1(1.5)	2(2.1)	결혼기간	8년 이하	14(8.4)
	국민학교졸	2(3.0)	24(25.5)		9 - 14	56(33.8)
	중학교졸	11(16.7)	36(38.3)		15 - 20	53(31.9)
	고등학교졸	46(69.7)	28(29.8)		21년 이상	43(25.9)
	대학졸이상	6(9.1)	4(4.3)			
배우자의 직업	농업직	53(84.1)	76(77.6)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82(51.3)
	전문.행정.사무직	3(4.8)	9(9.2)		비동거	78(48.7)
	판매.서비스직	7(11.1)	6(6.1)	미혼자녀 출타여부	예	49(29.7)
	자영업, 기타	0(0.0)	7(7.1)		아니오	116(70.3)
농가의 평균소유 경지규모	논	1,817 평		농가의 년 평균 조수입	논농사	417 만원
	밭	1,015 평			밭작물	290 만원
	과수원	1,450 평			하우스농사	1,088 만원
	계	4,282 평			과 수	733 만원
					축 산	1,294 만원
					특용작물	169 만원
평균 부채액	6,820 만원				가족원봉급등	343 만원
					재산소득 등	56 만원
					총년간조수입	4,666만원

* 무응답의 처리로 문항별 빈도에 차이가 있음

〈표 2〉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실태

농사의 종류	농사짓는 비율	여성의 노동 참여실태a		
		남성응답(N=67)	여성응답(N=99)	F 값
논 농사	66.7%	3.98	5.07	4.85*
밭 농사	75.2%	5.06	5.74	2.32
과수농사	48.8%	5.00	5.94	3.51
하우스 농사	41.1%	5.71	7.53	7.45**
축 산	48.1%	3.36	4.56	6.20*
평 균		4.46	5.67	12.53***

a: 남편의 참여를 10으로 했을 때 부인의 참여정도를 나타낸다.

은 농가에서 일반 밭농사를 하고 있으며, 하우스 농사는 41.1%로 가장 적었다. 일반 밭농사나 과수의 비중이 높은 것은 경상북도 지방의 농업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대상 농가 가운데 1가지 종류의 농사만을 하는 전업농이 12.4%, 두가지 종류를 농사짓는 농가가 24.0%, 3가지가 37.2%, 4가지가 24.0%, 5가지 모두 농사를 하는 경우가 2.3%로, 1농가 당 평균 2.8가지 종류의 농사를 짓고 있었다.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실태는 남편이 자기 부인인 농촌여성의 노동실태를 인지하는 것과 여성자신이 평가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남편들의 평가에 비해 농촌여성 스스로 자신의 참여실태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자기 부인의 참여실태가 자기 노동의 45%가량을 담당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들은 남편의 57%정도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농촌여성들은 자기 남편의 53% 정도를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농사, 하우스농사, 축산 등의 농업노동 참여실태에서 남녀간의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남성이나 여성 모두는 농사종류 가운데 농촌여성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농사는 하우스 농사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하우스 농사의 여러 작업과정이 여성노동 집약적이라는 조사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또 여성의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부문으로 축산을 들고 있는데, 축산은 작업의 성격상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노동이 참여하기 어려운 작업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농가의 지난 1년간 소득 가운데 부인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한 결과, 남편은 전체 가계소득에서 부인의 기여비율이 평균 41.5%라고 응답하였고, 여성들은 자신의 기여비율이 44.0%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농촌여성의 농가소득 기여정도는 평균 43.0%였다. 이는 도시빈곤가계 취업기혼여성의 가계소득 기여비율이 43.3%라고 한 김시월의 연구결과와 같은 수준이며(김시월, 1993:117),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가계소득 기여율 41.7%나(조희금, 1997:5), 1994년도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에서 부인의 근로소득이 가계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인 25.3%(통계청, 1995) 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즉 농촌여성은 농가소득 기여율에서 볼 때 남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실태

1) 경제적 의사결정권

농촌여성들이 가정일 혹은 영농에 관계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인의 결정권이 높은 것이며, 2.5가 중간점이다. 〈표 3〉에서 보면 가정내 경제적 문제에 대해 남성이 응답한 농촌가정의 의사결정유형은 평균 2.02, 여성은 평균 2.05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 평균은 2.04였다. 즉, '부부가 의논하지만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경제적 문제 가운데서는 영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가정경영에 관한 경제문제인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를 사용하는 일'은 '부인 혼자 결정'하는 편에 가까운 부인 주도형이고, 농업경영에 관한 '농기계를 사는일'이나 '영농자금을 대부받는 일' 등은 '남편 혼자 결정'하는 편에 가까운 남편주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들(김종숙 외, 1992, 경북농촌진흥청, 1994)에서 가장 부인참여도가 낮았던 '논/밭이나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은 평균 의사결정 점수 1.88로 '남편이 혼자 결정'하지만 부부가 의논하고 남편이 결정하는 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서 부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 농촌여성의 자산소유 실태

농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명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동명의로 된 경우 1사례를 포함하여 부인의 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단지 18.1%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부인명의의 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8사례로 200평에서 2030평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며, 밭을 소유한 경우는 6사례, 과수원 2사례, 집을 부인명의로 한 경우는 11사례, 기타 축사나 창고부지 등을 부인명의로

〈표 3〉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의사결정 내용	의사결정 점수 a		
	남성응답(N=67)	여성응답(N=99)	F값
농기계를 사는 일	1.48	1.53	.39
영농자금을 대부 받는 일	1.55	1.63	.64
농산물이나 가축을 판매하는 일	1.56	1.76	4.15*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	1.83	1.75	1.00
재배작물의 종류를 결정하는 일	1.70	1.88	2.85
친지의 길흉사에 부조금을 내는 일	1.73	1.96	3.70
논/밭이나 주택을 사고 파는 일	1.91	1.86	.61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일	3.29	3.00	7.08**
생활비를 사용하는 일	3.33	3.25	.39
평 균	2.02	2.05	.22

a: 4점 리커트척도의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인주도형 의사결정 유형임을 나타낸다.

〈표 4〉 농가자산의 명의 실태 (N=166)

항 목	N(%)
모두 남편 명의	122(73.5)
남편과 부인 명의	29(17.5)
부부공동 명의	1(0.6)
남편, 부모, 아들명의	10(6.0)
부모님 명의	4(2.4)

하고 있는 경우가 2사례였으며, 자동차를 부인명의로 한 경우는 15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다른 자산은 없고 자동차만 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도 9사례가 있었다.

본 조사결과는 1992년 김종숙 등의 조사결과 보다는 부인명의의 자산소유가 다소 증가한 것이나, 아직도 농촌여성의 토지를 비롯한 자산소유 실태는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농촌여성들이 자산외에 따로 자신의 소득을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노동참여 정도나 가계소득 기여도와 비교할 때 자산소유 실태를 통해서 본 이들의 경제적 지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인명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유에 따라 자산의 명의이전이 부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 5〉에서 부인명의로 이전한 이유를 보면, 소유자산의 명의를 부인에게 이전한 이유는 소유권을 분리해 놓으려고 한 것이 45.5%로 가장 큰 것이었다. 그 다음은 부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이 27.5%, 부인이 원했기 때문에 명의를 이전한 경우가 9.0%, 그리고 기타 영농후계자 자금을 받기 위한 것과 자동차의 경우 사고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 이유라고 답하고 있었다. 즉 농촌여성의 노동력이나 소득기여에 대한 보상의 의미보다는 보증 등으로 사고가 났을 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유권 분산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이는 최근 도시의 경우 부도나 보증사

〈표 5〉 자산을 부인명의로 이전한 이유

(N=30)

명의 이전이유	%
소유권을 분리해 놓기 위해	45.5
부인이 원했기때문	9.0
부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했으므로	27.5
부인의 재산을 만들어주기 위해	4.5
후계자 자금을 받기 위해	4.5
사고시 재산보호를 위해	9.0

고때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청약하는 아파트 계약을 부인명의로 한 경우가 30%나 된다는 보도의 의미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동아일보, 1998.6.15). 하지만 농촌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을 전담할 뿐 아니라 농업노동에 남편의 절반정도 참여하고 가계소득의 기여도는 남편과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노동력 제공이나 소득기여도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자산을 부인명의로 이전한 시기는 대체로 1990년대 후반이 대부분이다. 논을 부인명의로 이전한 8사례 가운데 5사례가 1995년 이후이며, 집을 이전한 10사례 가운데 7사례가 1996년 이후였다. 이는 증여세에 관한 기준이 1996년부터 변경된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에 자산을 부인명의로 이전한 비율이 높은 것은 앞으로 부인명의의 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하겠다. 이는 자산을 소유한 농촌여성과의 면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바,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등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실제로 자산을 여성 명의로 이전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경제적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여성의 경제적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회귀분석에 의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면, 농촌여성들의 가정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성과 여성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들은 부인의 소득기여도가 높다(P〈.001)고 평가했을 때, 부인의 경제적 의사결정권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들은 자신의 성역할태도(P〈.001)가 근대적일수록 자신의 경제적 의사결정권이 많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의사결정 유형은 성역할태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 여러 연구결과나(Rosen 등, 1983; Qualls, 1987; Cynthia, 1995),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영농의사결정권도 높아진다고 한 연구결과(한국여성개발원, 1987, 152; 김종숙 외, 1992, 104)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6〉 농촌여성의 경제적의사결정권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 인	남성응답	여성응답
	β	β
성역할태도	.253	.412***
노동참여정도	-.066	.208
소득기여정도	.474***	-.144
경지면적	.065	-.058
연 령	-.173	.001
학 력	.002	-.056
상 수	10.263***	8.785**
R^2	.308	.210
F 값	3.79	3.15

*** P〈.001

2) 농촌여성의 자산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가구 가운데 18.1%인 30명만이 부인명의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는 종속변수인 부인명의의 자산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짓모형이 부인명의의 자산소유 여부를 바르게 예측할 가능성은 85.71%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여성 명의의 자산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농촌여성의 경제적 의사결정 참여정도(R=.277), 여성 본인의 학력(R=.273), 그리고 가계소득 기여정도(R=.229)였다. 즉 농촌여성 가운데 가

3) 농촌여성의 자산소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응답으로 나누어 로짓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남성응답의 로짓모형은 모델이 유의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여성응답자의 로짓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표 7〉 농촌여성 명의의 자산소유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여성응답)

독립변수	B	S.E.	Sig.	R	Exp(B)
경지면적	4.77E-05	9.846E-05	.628	.0000	1.000
성역할태도	.0264	.0699	.706	.0000	1.026
의사결정권	.7261	.2562	.005	.2769	2.0671
노동참여정도	-.2053	.2176	.346	.0000	.8144
소득기여도	.0865	.0349	.013	.2293	1.0903
연 령	-.2041	.1030	.815	.0000	.9761
학 력	2.0825	.7425	.005	.2730	8.0243
상 수	-20.5201	7.0792	.004		
-2 Log Likehood		46.306			
Model Chi-Square		32.391			
Significance		.0000			

정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학력이 높고, 가계의 소득기여정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자기 명의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여성들이 자신들의 노동력 투입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농촌여성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경제적 지위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지표는 가정내 경제적 의사결정에의 참여정도와 농가가 보유한 농가자산 가운데 여성명의의 자산소유 여부이다.

조사대상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전통적인 농촌보다는 앞으로 농촌을 이끌고 나갈 주도적인 농민층을, 그리고 남편이 평가하는 부인과 여성자신의 평가를 비교하기 위해 경북지역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기혼남성과 여성 166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농촌여성들의 농업노동참여는 남편의 53%정도, 가계소득에 대한 기여도는 43%정도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참여가 많은 농사는 하우스 농사였다. 이는 농촌여성들의 노동력이 농가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소득기여율 역시 도시의 취업기혼여성보다도 큰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정도에 대한 평가는 남성과 여성의 응답에 차이가 있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노동참여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농촌여성들이 가정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부부가 의논하지만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영농에 관계된 영역인 '농기계의 구입'이나 '영농자금 대부' 등에 관한 문제는 거의 '남편이 알아서 결정하는' 수준이었으며, 다만 '생활비의 사용'이나, '가전제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관한 의사결정은 부인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농촌여성들은 아직도 토지 등 농가의 자산소유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8%정도가 여성명의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증가한 자동차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자산을 여성명의로 한 경우도, 남편이 보증을 서는 등 위험한 경우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네째, 농촌여성의 가정내 경제적 의사결정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농촌여성의 성역할태도와 남편이 평가한 부인들의 가계소득 기여정도였다. 즉,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그리고 가계소득 기여정도가 높을수록, 농촌여성의 경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성명의의 자산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의사결정권, 가계소득기여도, 여성 자신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농촌여성 가운데 가정내 경제적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하고, 가계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며,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신 명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여성노동력이 농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앞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가족농 육성정책은 농촌여성 노동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며, 농촌의 가정을 그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가정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농촌가정의 유지는 그 가정의 주부인 농촌여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여성의 과중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하므로써 이들이 여성농민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농촌가정을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결과 농촌여성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농가자체가 경제적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그 뿐만 아니라 농촌여성은 가정내에서 다시한번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 농촌여성과 남편들의 성역할태도는 여성의 경제적 의사결정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며, 또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정도는 여성의 자산소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농촌여성의 노동참여 및 이들이 가계소득에 기여하는 정도와 그 의미를 농촌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교육시켜서, 농촌여성 노동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농촌의 토지소유 및 보유에 대한 제도보완을 통해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들면, 농가의 경우 결혼 후 형성한 자산을 등록할 때,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제도보완을 할 수 있다. 농촌여성들은 이제 농가의 보조적인 인력이 아니라 기간노동력이므로 이들의 노동참여 실태나 소득 기여정도에 상응하는 농가내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정내의 인식전환과, 사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경상북도 농촌진흥원(1994). **농촌여성의 역할구조와 가족주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보고서.**

김시월(1993). 도시빈곤지역 취업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가계소득기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양희(1995). 여성지위의 실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심리기제: 남녀간 경제적 권리의식 및 커리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48, 93-118.

김이선(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인숙 · 최은숙(1991). 농촌여성 노동의 화폐적 가치평가를 위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2), 121-134.

김정호(1998). 가족농 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주최. 가족농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문.

김종숙 · 정명채(1992).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주숙(1992). 농촌여성과 일-그 체계와 보상-.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한울아카데미.

농촌진흥청.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분석 보고서.** 1979, 1984, 1988, 1994.

박민자(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박성자(1996). 여성농업인 현실과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경북대학교. 경북지역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2-33.

안수미(1998). 자산관리과정과 부부의 역할구조.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대(1993). 농업 노동력의 여성화와 대응방향. 농촌생활과학회지 4(1), 37-44.

정기환(1997). 농가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희금(1986). 농촌주부가 인지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소. 가정생활연구 1, 29-43.

조희금(1996). 경북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노동실태와 경제적 지위,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경북지역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69-86.

조희금(1997).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1-14.

통계청(1995). 맞벌이 가구의 가계수지.

한국여성개발원(1987).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한경혜 · 장미나(1993).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분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1), 45-56.

홍두승(1992). 사회조사분석 제2판. 서울:다산출판사.

Fortmann, Loise(1984). Economic status and women's participation in agriculture: A Botswana case study. *Rural Sociology* 49(3), 452-464.

Rodgers, John L. & Rodgers, Joan R.(1997). The economic impact of rural to urban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or male labor-force participa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78 (4), 937-954.

Rosen, D.L. & Granbois, D.H.(1983). Determinants of role structure in family financial management. *J. of Consumer Research* 10, 253-258.

Qualls, W.J.(1987). Household decision behavior: the impact of husbands' and wives' sex role orientation. *J. of Consumer Research* 14, 264-279.

Webster, C.(1995). Determinants of marital power in decision making,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2, 717-722.